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8월 8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8월 8일

3.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관리 및 출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기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 관리토록 되어 있는 기금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변경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이 하도록 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충북의 지방문화예술의 활동과 진흥사업을 육성함에 있어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기금납입과 관리담당회계관직을 현실성있게 조정 변경 하므로써 기금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설립주체의 조문 “자치단체” 를 “충청북도에” 로 변경함과 아울러
종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납입하여 오던 기금납입방법을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로 납부토록 하는 계좌변경 사항과
기금출납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을 기금출납명령관 문화예술 과장에서 기금운용관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등 회계관직과 관리담당책임자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설치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